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39호

2026년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지원 사업 공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업통상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에 의거 「2026년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2.20.

산업통상부장관

1. 사업개요

□ (**목적**) 도시가스 미공급 및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을 지원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간 에너지 격차를 해소

□ (**예산**) '26년 1,400억원

□ (**사업기간**) '26.1월~'26.12월

□ (**지원대상**) 도시가스사업자가 설치하는 본관 및 공급관(정압시설 포함)

□ (**지원근거**)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성 미달, 가스공급시설 설치 곤란 지역 등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 가능

2. 사업 추진체계

□ (**보조사업자**) 광역지자체 (도·특별시·광역시 등 총 17개)

○ 광역지자체에 보조하여 지자체보조사업으로 추진

□ (**지원비율**) 국비 70%, 지자체 및 도시가스사 30%

○ 지자체 및 도시가스사 지원비율은 조례 등에 근거하여 자율 편성

□ (**관련법령**) 도시가스사업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국가계약법 등

<사업 추진체계>

주무부처	보조사업자(주관기관)		사업수행기관(사업실시)
산업통상부	광역지자체	(필요시)위탁기관	지역도시가스사
‣ 수요조사 ‣ 사업계획 수립 ‣ 예산 확보 ‣ 주관기관 선정 ‣ 사업관리 총괄	‣ 예산 조정 ‣ 인허가 지원 ‣ 안전관리체계 구축 ‣ 사업관리 ‣ 민원대응	‣ 주관기관 업무 지원 ‣ 예산 집행 지원 ‣ 사업정산 지원 ‣ 결과보고 지원	‣ 공사수행 ‣ 안전관리 수행 ‣ 사업정산 보고 ‣ 결과보고

3. 사업 수행절차

<사업 수행절차>

수요조사	→	보조사업자 선정	→	보조금 지급(1차)	→
광역지자체→산업통상부 (2~3월)		산업통상부 (4~6월)		산업통상부→광역지자체 →가스사업자(6월)	
배관공사 완공 설치확인	→	**보조금 지급 (최종)**	→	**결과보고**	→
광역지자체 → 가스사업자 (~11월)		산업통상부→광역지자체 →가스사업자(12월)		가스사업자→광역지자체 →산업통상부(12월)	

□ (**선정방식**) 광역지자체 수요를 받아 산업통상부에서 최종 선정

□ (**선정절차**)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추진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5조에 따라, 공모외 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음

□ (**예산배분**) 공급 취약성 및 필요성, 사업 효과성, 지자체 추진의지, 정책연계성,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 배정

○ '26년 예산(1,400억원) 보다 신청액이 적으면 추가 수요 조사 후 배정

□ (**예산집행**) 보조금 교부, 집행, 계약, 정산, 결과 보고 등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

○ 필요시, 광역지자체는 위탁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사업 보조 지원

* 위탁수수료는 광역지자체와 위탁수행기관이 협의하여 지급

4. 선정절차 및 신청방법

□ 지원대상 지역 및 지역별 예산 배분기준* : [붙임1] 참고

* 배분기준은 예산상황 및 신청규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절차 : '26.3.31.까지 서류 접수 후 '26.6월 사업자 최종 선정*

사업 공고 ('26.2.20.)	▸	신청서 접수 ('26.2.20.-3.31.)	▸	선정 평가 ('26.4월~6월)	▸	사업자 최종 선정 ('26.6월)
e나라도움 산업부 홈페이지		전자문서 및 e나라도움 접수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의		선정기관 e나라도움 등록

* 상기일정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획예산처에서 실시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접수 기한내 온나라 전자문서와 e나라도움으로 모두 제출

○ 첨부자료 용량이 클 경우 첨부자료는 우편 접수 가능하며, e나라도움 접수 세부 사항은 별첨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 TEL. 1670-9595

○ 제출 서류목록

- 사업계획서(별지 1호 참조) 1부
- 사업수행기관(간접보조사업자) 개요(별지 2호 참조) 1부
- 사업계획서 제출공문(기관장 날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수행기관 정관 1부

5.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자 및 수행기관은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지방비·자부담금)을 현금으로 납입하고 당해 연도에 교부받을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함

○ 신청기관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활용하고 부담하기로 한 지방비·자부담금(현금)의 납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하여야 함

○ 신청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방비·자부담금 중 현금 입금이 불가한 경우, '지방비·자부담금 현금 납입 유예신청(공문)'을 작성 후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방법

○ 「산업통상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3조(보조금 교부방법)에 따라 보조금은 2차례 나누어 교부하며, 1차 선금교부 후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여부(2차)를 결정함

- (1차 선금지급) 수행기관 지방비부담금(현금) 납입확약서 확인 후 선금(총사업비의 70% 이내) 지급
- (2차 잔금지급) 진도점검 후 잔금 지급

○ 진도점검에 따라 사업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보조금 규모를 조정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6. 사업의 선정 및 확정

□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광역지자체장은 최종 확정된 예산 및 내역을 통지 받은 경우 공급대상 내역을 토대로 지원목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사업 및 사업자별 배정금액을 결정, 최종사업계획서를 1개월 이내 산업통상부에 제출하여야 함

○ 산업통상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자체에 사업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7. 보조금의 이월, 반환, 강제징수

□ (보조금 이월) 원칙적으로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유(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월을 할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에 이월 승인 요청 및 사유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ㅇ 이월이 필요한 경우 11월 말까지 이월 승인 요청해야 함

□ (보조금 취소) 허위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거나, 보조금을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교부금 반환 명령 및 강제징수 등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음

8. 보조금의 사용

□ (법인카드)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클린카드로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 (보조금 구분계리)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지출 및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 해야함

9. 완료 및 사후관리

□ (실적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 종료시에는 3개월 이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보조사업 발생 수익금 처리)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함

□ (정산잔액 반납) 다음의 정산 잔액은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해야 함

ㅇ 기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를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 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 (집행잔액 반납) 보조사업의 완료.승인 취소.회계 연도 종료시는 집행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발생이자를 함께 반납해야 함

□ (지자체 보조사업)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 확보시 기 교부된 국비(보조사업비)를 전액 반납해야 함

□ (회계자료 보관 등) 보조사업 수행 관련 자료는 5년간 보관해야 함

□ (실태조사) 산업통상부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시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0. 유의사항

□ (보조사업자의 성실 수행) 보조사업자(간접 보조사업자(사업수행기관) 포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본 공고에서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포함), 보조금을 법령 규정 및 보조금 교부조건 내용에 위배하여 사용한 경우, 허위신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산업통상부장관 승인 필요사항) 보조사업자는 아래 경우에는 반드시 산업통상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보조사업의 내역사업 변경 포함) 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11. 기타사항

□ 계약 추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정산 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기획예산처 및 산업통상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준수

□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적용 대상 사업으로, 사업수행 전 시스템 사용법 및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함

* e나라도움(bojo.go.kr) > "e나라도움 소개" > "참여와소통" > 보조사업자용 매뉴얼 참고

□ 보조사업자 선정 후, 사업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 담당부서(가스산업과)와 협의를 통하여 추진

□ 본 공모 신청 및 사업수행과정에서 산업통상부에서 제공한 자료는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정보유출 등 모든 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음

□ 문의처

○ 산업통상부 가스산업과 안여선 사무관(044-203-5239)

산 업 통 상 부

붙임1 지원대상 지역 및 지역별 예산 배분기준(안)

□ **지원대상 지역**

○ **보급률이 70% 미만**으로,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시·군·구 지역**

① 지역별로 규정한 **경제성 확보 미달 구간**

* **지자체별로 경제성 확보 기준**을 **배관 100m당 최소세대수**(전국 평균 43가구)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경제성 확보구간은 **도시가스사 자체적으로 배관 설치**

② 지자체 및 도시가스사 **사업비 지원비율(30%) 충족**한 구간

③ **LPG 보급망 설치 예정지역과 중복이 아닌** 구간

④ '26년 공급배관건설 **융자 대상과 중복이 아닌** 구간

⑤ **도시가스사업자와 사업 추진 관련하여 협의 완료**된 구간

○ **전통시장 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전통시장

○ **가스공사 LNG 생산기지 및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가스공사 LNG 생산기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소	지자체	주변지역	사업소	지자체	주변지역
인 천	연수구	송도동	고 리	기장군	장안읍, 일광면
평 택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울주군	서생면
	화성시	우정읍, 장안면	새 울	기장군	장안읍
통 영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울주군	온양읍, 서생면
	고성군	황리, 우동리, 덕포리	한 빛	영광군	홍농읍, 백수읍, 법성면
삼 척	삼척시	호산리, 월천리, 노경리		고창군	상하면
제 주	제주시	애월읍	월성,신월성	경주시	감포읍, 양북면, 양남면,
			한울,신한울	울진군	울진읍, 죽변면, 북면

□ **신청 기준**

○ (**신청개수**) 광역지자체별 **3개(후보지역 1개 포함) 이내 시·군·구(세종시·서귀포시·제주시 포함) 신청 가능**

* **기재부 보도자료('25.12.2)**에 따라 **20개소 내외 지역 지원,** 제외대상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2개 지역**과 **사업여건·수요 변화 등에 대비**하여 **후보 1개 예비지역 신청**

○ (**신청액**) 광역지자체별 **200억원 이내***(**국비 기준**, 후보지역 제외)

* (산출근거) 지역별 평균 지원금 70억원(=1,400억원/20개소)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보조금 신청 방지 등을 위해 광역지자체별 신청액은 200억원 이내로 제한

□ 지역별 예산 배분기준

○ (**배분방식**) ①평가표에 따른 **점수 산정**, ②점수에 따른 **신청액 비율 조정**, ③총예산(1,400억원) 범위 내에서 **조정 비율에 따라 예산 배분**

- 단, **평가 점수 70점 미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액 조정 비율(안)>

구분	95점 이상	90점 이상 95점 미만	85점 이상 90점 미만	80점 이상 85점 미만	75점 이상 80점 미만	70점 이상 75점 미만	70점 미만
신청액 조정 비율(%)	100	95	90	85	80	75	대상 제외

○ (**평가항목**) **보급률, 사업효과, 지자체 추진 의지 등 5개 항목**

<지역별 예산 배분 평가표(안)>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요소 설명	평가지표(방법)
① 공급 취약성·필요성 (30%)	미공급 세대 수	도시가스 보급률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수혜 범위를 평가	도시가스 보급률 (도시가스협회,'25.12월)
	공급 필요성	공공 재정 지원 없이 도시가스 공급이 곤란한 정도 평가	지역별 사업계획서
	지역 낙후도	지역 사회·경제적 여건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 평가	KDI 보고서 (지역낙후도 분석 개선방안 연구, 2020년)
② 사업 효과 (40%)	사후 유지 가능 여부	장기적인 배관 유지 등 실질적 효과 평가	지역별 사업계획서
	신규 공급 증가 비율	현재 공급 대비 신규 공급 세대수, 신규 공급용량 등 평가	지역별 사업계획서
	투자비 효율성	총투자비 투입 대비 공급 효과 평가 (배관연장/총투자비),(수요가수/총투자비)	지역별 사업계획서
③ 지자체 추진 의지 (20%)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지자체 지원	지역별 과거 추진 실적, 지자체 보조금 비율, 조례 등 관련규정 현황 등 지자체 적극적인 참여 의지 평가	지역별 사업계획서
④ 집행 가능성 (10%)	연내 공사 완료 여부	설계·노선 확정, 토지 수용 등 사전 절차 준비 정도와 사업 기간 내 준공가능 여부 종합 평가	지역별 사업계획서
(가점) 정책 연계성 (최대 5점)	정책 관련성	특별재난지역, 전통시장, LNG생산기지, 원전주변지역 등	관련법령에 따른 대상지역

※ (**참고**) 지역별 배분 예시

지역	신청액 (A)	점수 합계	신청액 비율금액 (B)	신청액 변화표 (C=AxB)	배분비율 (E=1400/D)	지역별 배분액 (F=CxE)
가	1,000억원	90점	95%	950억원	1,400억원 /2,450억원 = 0.571	543억원
나	2,000억원	72점	75%	1,500억원		857억원
계	3,000억원			2,450억원(D)		1,400억원

별지1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지원 사업계획서**

사 업 명	도시가스 공급배관 보조사업	지자체명	

사업내역	사업지역		사업 내역· 공급필요성 (요약)	
	순위	지역		
	1	00(시·군)		
	2	00(시·군)		
	3(후보)	00(시·군)		
소요사업비 (원)	국고보조금		원	00.0%
	지자체 부담금	시 도 비 (광 역)	원	00.0%
		시 군 구 비 (기 초)	원	00.0%
		소 계	원	00.0%
	민간부담금		원	00.0%
	(1-2위 지역) **합 계**			**100.0%**

연간 기대효과	지역	배관연장 (m)	수요가수 (개)	연간 예상판매량 (천㎥)	총투자비 (천원)	평균 투자회수 기간(년)
	1. 00(시·군)					
	2. 00(시·군)					
	합 계					
	3.(후보)00(시·군)					

별첨자료	시군구별 도시가스공급배관 보조사업 수요조사서 및 사업구간 상세계획서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보조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해당 지자체)장

산업통상부 장관 귀하

담당자 (작성자)	부서		전화번호	
	성명(직위)		E-Mail	

별지1-2 시군구별 도시가스공급배관 보조사업 수요조사서

사 업 명	도시가스 공급배관 보조사업	사업 기간	
사업지역		사업 수행기관	00도시가스

사업개요							
사업전망	수요전망		연간예상 판매량(천㎥)		배관연장(m)		
소요사업비 (원)	국고보조금			원	00.0%		
	지자체 부담금	시 도 비 (광 역)		원	00.0%		
		시 군 구 비 (기 초)		원	00.0%		
		소 계		원	00.0%		
	민간부담금			원	00.0%		
	합계				100.0%		
공급(사업) 필요성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							
향후 배관 유지 관련	ㅇ 배관 유지 관리 계획, 안전관리 계획 등 향후 배관의 유지방안 ㅇ 사업대상 배관 건설 이후 향후 추가 배관 연장 (계획) 등에 따른 장기적 효과 등						
지자체 지원 현황	ㅇ 지역별 과거 배관 투자 지원 실적, 지자체 조례 등 관련규정 현황 등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지자체 지원						
기타사항	ㅇ 연내 공사 완료 가능성(설계, 사업기간내 착공 준공이 가능한지, 설계 노선 확정 여부 등 사전 절차에 대한 준비도) : 필요시 별첨 가능						

수행기관 담당자	부서		전화번호	
	성명(직위)		E-Mail	

별지1-3 시군구별 사업구간 상세계획서

구분	연번	*1) 사업구간	배관 연장 (m)	수요 가수 (개)	연간 예상판 매량 (천㎥)	총투자비 (천원)	*2 경제성 분석결과 (단위년)	*3 경제성분석 산출내역	공사 기간 (0월~0월)	상세 일정
수요가수 미달지역										*계약, 인허가, 착공, 준공 예정월 등*
전통시장 지역										
생산기지 주변지역										
원전 주변지역										
특별재난지역										
계										

*1) 사업구간은 구간이 표기된 지도 별첨 제출
*2) 경제성 분석방법은 Payback Period 방법을 기준으로 작성
*3) 구간별 경제성 분석자료를 약술하되, 필요시 구간별 별첨자료로 대체 가능

별지2 수행기관(간접보조사업자) 개요

기 관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전화	
회사주소	(우.)			
담당자	성명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주요 사업	ㅇ
기관 연혁	ㅇ
공급 현황	ㅇ 공급권역 (보급율) ㅇ 25년 매출액, 수요가수, 판매량, 배관 ㅇ 공급개시일 등
재무 현황	ㅇ (B/S)자산, 부채, 자본 ㅇ (P/L)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작성
최근 3개년 공급배관 건설 실적	ㅇ 연도별 실적 (지역, 배관연장, 수요가수 증가, 배관 투자)
배관 안전 관리 현황	